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4
----------	-----

제출년월일 : 2020.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
군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자율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우리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사업의 내용 및 방법 등 (안 제4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에 253백만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0.08.05. ~2020.08.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8976, 2020.07.22.)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8976, 2020.07.22.)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복지과-40189, 2020.07.07.), 의견수용(기술지원과-5667, 2020.07.31.)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보급·지도와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농촌의 이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 가. 한국농촌지도자평창군연합회
 - 나. 한국생활개선평창군연합회
 - 다. 한국농업경영인평창군연합회
 - 라. 한국여성농업인평창군연합회
 - 마. 평창군4-H연합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바. 한국쌀전업농평창군연합회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라목의 사

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미리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수요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내용)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과학영농 및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 선진농업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3.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활동 지원
4.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5. 농업인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업인의 일과 생활 균형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한 교육·연구사업
8. 평창군 농업인교육관 내 농업인학습단체 전용 공간 제공
9.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등 위탁)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체활동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 사업 외에 농업인학습단체가 농촌지도 사업 또는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된 자체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붙임]

관련 법령 발췌

□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 및 자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제4조(지원사업의 내용)

- 시범사업, 국내.외연수, 과제 및 영농활동, 교육 및 행사, 정보화촉진 및 마케팅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학습단체 전용공간제공,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존의 지원사업의 지원근거의 명문화와 신규사업 발굴의 지원근거 마련

나. 추계 결과(연간)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253,380	
농업인단체육성	농촌지도자 중앙.도단위 대회참가	10,000	301-09
	농업경영인 중앙.도단위 대회 및 교육 참석	28,000	
	4-H 연합회 교육참가	10,000	
	여성농업인 중앙.도단위 대회참가	15,000	
	4-H 공동과제포 및 맞춤형과제 지원	29,000	
	농업인단체행사지원	41,000	307-02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생활개선회 중앙.도단위 대회참가 등	25,000	301-09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등	19,000	307-02
농촌지도자회 육성(도비)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정보지 지원	10,020	201-01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지원	3,000	301-09
농촌여성역량강화(도비)	농촌여성 정보지 구독비	9,360	201-01
	농촌여성 경영.마케팅교육 지원	3,000	307-02
4-H회 육성(도비)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비	3,000	201-01
	청년농업어카데미 참석 지원	3,000	301-09
	학교4-H 과제 활동지원	5,000	307-02
	청년4-H회원 기초영농지원	40,000	402-02

다. 재원조달 방안 :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추가비용 발생은 없으며, 일부 예산은 교육사업으로 편성 운영하여 총액은 감소 됨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연락처	(033) 330 - 13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253,38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1,113,380
농업인단체육성		133,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33,000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44,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4,000
농촌지도자회 육성(도비)		13,020	13,000	13,000	13,000	13,000	
농촌여성역량강화 (도비)		12,360	12,000	12,000	12,000	12,000	
4-H회 육성(도비)		51,000	50,000	50,000	50,000	50,000	
재원 조달		253,38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860,253.38
의존 재원	소 계	23,376	23,000	23,000	23,000	23,000	115,376
	보조금	23,376	23,000	23,000	23,000	23,000	115,376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30,004	192,000	192,000	192,000	192,000	998,004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230,004	192,000	192,000	192,000	192,000	998,004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